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지침 개정

1. 개정이유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부지침을 개정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조사의 원칙을 제시하여 이행사항을 알기 쉽게 함(안 제4조)

나.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방법을 반영함(안 제9조)

다. 법령 강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 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라. 상거래관계 종료 시 개인신용정보 삭제 및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안 제14조)

마. 고객의 자기정보 통제권 보장에 관한 강화방안을 구체화 함(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바.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관리 책임자의 임무를 명확히 함(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회 및 회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의 효율적 수집·이용 및 체계적 관리를 기하고,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서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나 정관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란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정보 중 거래상대방 개인에 대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등을 말한다.
2. “신용정보주체”란 처리된 신용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이란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중앙회는 신용상무로, 회원조합의 경우 전무 또는 신용상무(신용상무가 없는 조합은 지도상무)로 한다.
4. "동의철회권"란 고객이 더 이상 본인 정보를 제3자(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업무위탁회사는 제외)에게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본인에게 전화, e-mail 등의 직접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전화수신거부권(Do-Not-Call)"이란 고객이 더 이상 본인에게 조합 및 제휴회사 등의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전화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6. "제휴회사 등"이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 등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7. "개인신용정보시스템"이란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업무체계 등을 말한다.
8. “개인식별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의 생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9. “신용정보회사”란 신용정보업을 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0.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신용정보법 제

25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1. “신용조회업무”란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는 행위,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란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중앙회는 신용상무로, 회원조합의 경우 전무 또는 신용상무(신용상무가 없는 조합은 지도상무)로 한다.
13. “처리”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저장·가공·편집·검색·삭제 또는 출력하는 행위, 신용정보를 배달·우송 또는 전송 등에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기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 2 장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및 활용 명확화

제4조(개인신용정보 수집·조사의 원칙)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조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항,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4.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
5.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제5조(개인신용정보·활용 동의서 내용의 명확화) 조합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조합이 취득한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활용코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원칙),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에 따라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와 관련된 각종 동의서(이하 "동의서")상의 고객 동의 내용, 이용목적, 정보활용 및 제공범위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지 1호> ~ <별지 10호>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 설명 및 고지) ①동의서 상의 동의 내용 및 신용정보법 등에서 부여하고 있는 각종 권리사항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별지 11호>와 같이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을 작성하여 고객 앞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 안내문을 항상 게시하고, 고객 동의시 동의할 내용과 신용정보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고객 동의서를 제공 받을 때에는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신용정보 관리·보호정책의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다만, 회원조합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다. 이하 같음) 또는 영업점 등에 항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고객정보 활용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①고객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제휴회사 등과 고객 신용정보의 활용, 보안 및 위규시 제재내용 등이 포함된 <별지 12호>의 "고객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정보제공업체 중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와는 보안관리 약정을 보다 강화된 내용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제3자를 대신하여 고객동의서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8조(신용정보의 활용기준 설정) ①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연체정보 등의 최대 활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동 관리기간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측정 등의 모델 적용시 참고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②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정보, 카드탈회자 정보 등은 제3자 앞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 3 장 개인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9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조합은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 목적, 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객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등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④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 제공에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고객이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에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다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제11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①고객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단,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3. 제11조 제6항 각 호의 경우

제12조(개인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 고객으로부터 개인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식별정보의 항목
3. 수집된 개인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사항 변경 시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 후 동의 획득

제13조(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3. 수집된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와 관련하여 녹취 시에는 녹취사실 고지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의2 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에 관한 사항

제14조(개인신용정보의 보호) ①조합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신용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이내(이용 목적 달성시 3개월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삭제 예외 적용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휴면예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5.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 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조합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고객이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전에 그 삭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③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 현재 거래 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 보관하여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관리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제 4 장 고객의 자기정보 통제권 보장

제15조(동의철회권) ①고객은 본인 신용정보의 제3자 앞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제3자 앞 신용정보의 신규제공 및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본인에게 전화, e-mail 등의 직접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동의철회 신청은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및 서면<별지 13호>을 통하여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신용정보주체에 한한다.

③복합 금융상품 개발 지원, 기존 계약관계의 안정성 등을 위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동의철회 신청과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고 조합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업무위탁회사 등에 대한 동의철회 신청은 제한할 수 있다.

④동의철회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제휴회사 등에 신규정보 제공 중단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는 접수일의 익월 10일까지 제휴회사 등에 통보하여 제휴회사 등으로 부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처리결과를 회신 받는 등 제휴회사 등이 신청고객에 대한 직접 마케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전화수신거부권) ①고객은 조합 및 제휴회사 등의 전화마케팅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은 직접 또는 제휴회사 등이 전화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화수신거부 신청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및 서면<별지 13호>을 통하여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신용정보주체에 한한다.

③전화마케팅을 하는 제휴회사 등이 자기회사명, 정보제공자 등을 미리 안내하여 고객정보의 취득 경로를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제휴회사 등과의 계약 시 동 내용을 제휴계약서에 포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전화수신거부 접수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자체 진행하는 전화마케팅이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전화수신거부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일의 익월 10일까지 제휴회사 등에 통보하여 제휴회사 등으로부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처리결과를 회신 받는 등 제휴회사 등이 신청고객에 대한 전화마케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기록보존) 제15조 및 제16조와 관련한 고객의 신청내용을 최소 1년간 보관하여 분쟁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오류정보 정정청구) ①고객은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가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경우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 또는 사실조회 중임을 처리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경우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고객이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고객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고객은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고객이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필수적 개인신용정보는 5년) 경과 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상거래 근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①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신용정보 누설통지) ①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누설된 신용정보의 항목
2. 누설된 시점과 그 경위
3.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회사등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소관부서는 신용정보 누설 발생확인 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누설된 신용정보의 고객이 1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대출신청결과 안내서) 대출이 거절된 고객 중 거절의 사유를 요청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6조의 1항에 따라 “대출신청결과 안내서”<별지 14호>를 작성하여 요청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5 장 내부통제 강화

제23조(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지정) ①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의 총괄을 위하여 제3조제3호에서 지정한 자를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으로 지정·운용한다.

②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③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공개하는 경우, 신용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한다.

제24조(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임무)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지침」 제·개정
②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민원 등의 이행 상황 감독
③고객 피해 구제 및 관련 내부시스템 점검
④관련부서 모니터링
⑤고객의 동의철회 및 전화수신거부(Do-Not-Call)에 대한 성실한 이행여부 감독
⑥내부직원 교육 담당 등

제25조(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지정) 조합은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제3조11호에서 정한자를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제26조(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임무)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조합 직원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2. 조합 개인신용정보 관리 실태 점검 및 신용정보의 외부반출 통제
3. 조합 개인신용정보 처리 관련 이용자 피해 접수 및 신고
4. 조합 직원에 대한 신용정보보호 전달교육
5. 기타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업무

제27조(내부직원의 고객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①고객 신용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신용정보의 조회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②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는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그 신용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 내역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보안대책) ①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에 한해 개인신용정보시스템 (물리적 공간 포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②개인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공격 또는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신용정보의 파괴, 손실 또는 손상으로부터 신용정보를 보호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고객정보 유출 및 대응사례 등을 발굴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제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등 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친 자에 대한 제재는 인사 관련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6 장 기 타

제30조(민원처리) 신용정보의 제공 및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처리 및 피해고객의 구제절차는 민원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이 경우 민원담당 부서는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통지 등 민원 처리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0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